

용산구 원호로3가 1-15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
공급촉진지구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86호(2026.7.09.)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「용산구 원호로3가 1-159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(청년안심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」에 대하여 측량 결과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변경을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24일
서울특별시장

I. 변경(정정)사유

○ 측량 결과에 따른 촉진지구 변경(정정)하는 사항임

II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I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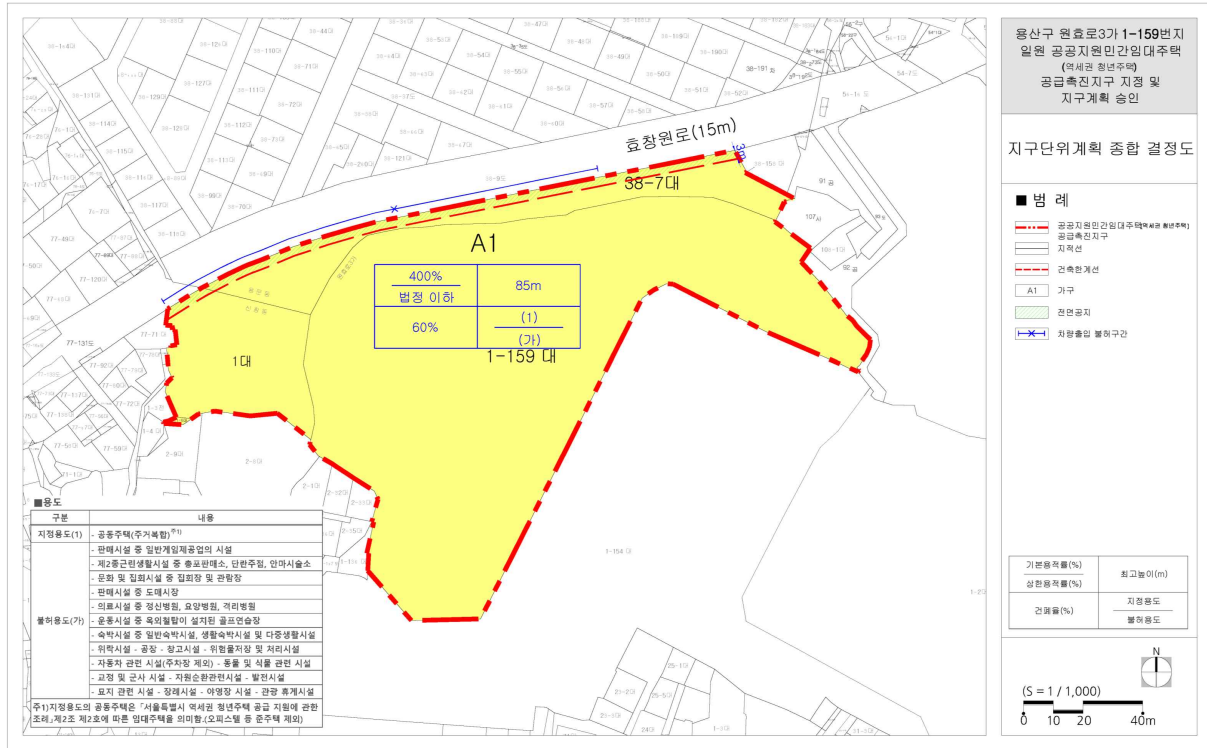
1. 지구계획의 개요(변경없음)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4.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(변경없음)
5. 인구·주택 수용계획(변경없음)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(변경없음)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변경) : [붙임]

[붙임]

1. 도시·군관리계획(변경없음)
2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3. 방재계획(변경없음)
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(변경없음)
5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6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7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8. 관계도면(변경) : 붙임

관계도면 : [붙임]

■ 공급촉진지구 결정도(기정)



■ 공급촉진지구 결정도(변경)

